

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[전혜연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91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7.

발의자 : 전혜연, 이진환, 박경원,
박윤옥, 이경숙, 한근수,
정현미, 김지훈(민)

1. 제안 이유

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업무추진비 규칙의 범위 구체화(안 제2조)
- 나.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근거 정비(안 제3조)
- 다.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시기 명확화(안 제6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6. 관련법령 :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의회운영업무추진비”를 “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의정운영 공통경비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”을 “,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1회 이상”을 “다음달 말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업무추진비”란 남양주시의회 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사 용하는 <u>의회운영업무추진비</u> 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 <u>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의정 운영공통경비</u> ----- --.
2.·3.(생략)	2.·3.(현행과 같음)
제3조(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) 의 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「공직선 거법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 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<u>집행기준</u> 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·집행하여야 한다.	제3조(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) --- ----- -----, <u>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에 관한 규칙</u> 」----- -----.
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	제6조(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남양주시의회는 매 분기 <u>1회</u> <u>이상</u>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 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다음</u> <u>달 말일까지</u> ----- ----- 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 첨부 사유

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신상민

☑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
제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)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(이하생략)

☑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제121조(집행현황의 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(생략)

2. 업무추진비 집행내역

가. 대상: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

나. 항목 및 주기와 시기: 별표 2의2에 따름

(이하생략)